

Pensions at a Glance: Public Policies across OECD Countries 2005 Edition

Summary in Korean

OECD 연금 전체상: 2005 년 OECD 국 공공정책

국어 개요

최근 해 동안 OECD 국 전체에 연금 개혁의 대물결이 일으켜졌다. 이런 변화는 인구 고령화 배경하 연금 제도 재정 지속 가능성에 관한 우려를 출발점으로 초래된 것이다. 연금 제도의 세부 검토가 지적하듯 연금 제도는 구성상 복합적 구조와 규칙을 수반하고 있어 퇴직-소득 제도간의 비교를 더욱 어렵게 만든다. 그렇지만 연금 개혁의 경험 사례와 개혁 유효성에 관한 인식 공유는 정책입안자에게 상당 가치의 정보로 활용되어진다.

오늘 근로 초보자가 퇴직 때 수급 기대할 수 있는 연금 수준을 본고 검토 대상으로 하여 정책상의 의문점 다수를 조만간 해소하려고 한다. 퇴직-소득제도는 과연 빈곤으로부터 개개를 보호해 줄 수 있나? 이 제도는 재정 지속 가능한가? 저소득자나 한 때 비고용 상태였던 자의 상황은 어떻게 다루어지나? 본고는 바로 향후 격년으로 펴낼 시리즈의 첫째 발간물이다. 이어 차후 발간물에 연금 개혁의 효과성 평가를 반영할 예정이다.

본고는 연금 제도가 앞으로 추구해야 할 노선 방향을 제시한다. OECD 국간 비교를 보면 연금 제공 방식이 다양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본고는 민간 위탁 연금 모형 전부의 포괄적 접근법을 통해 공적 연금 제도 뿐 아니라 강제적 민간 연금 또한 분석 대상에 포함시키도록 한다. 아울러 고령층 사회 안전망 현황을 파악하여 국가간에, 근로자와 연금수급자간에 상존하는 세제 차이점을 고찰토록 한다. 나아가 본고는 그 자체로, 세대간, 세대내의 소득 이전을 묘사하는 완전 도표로도 활용되며 이는 연금 제도의 사회적 적정성 여부에 관한 풀이도 가능케 한다. 연금 프로그램은 두 가지 주요 목표를 갖는다. 첫째 목표는 저소득 연금 수급자를 위한 소득 재분배와 노후 궁핍 예방이다. 둘째 목표는 근로자의 퇴직 후 노후의 생활 수준 유지를 위해 근로 소득을 적정 수준에 대체해 내는 점이다. 대다수 국가가 이 양대 목표를 정부의 연금 정책 전반에 걸쳐 반영하는 실정이지만 이들 각 목표 달성이 갖는 중요 정도는 국가마다 뚜렷이 달라진다.

본고에 따르면 OECD 국 평균소득 근로자 경우, 세후 연금 소득은 현재 세후 소득 규모의 70% 수준에 불과할 것이라는 예측이 가능하다. 한편 순소득대체율이 최저 수준인 국가는 기본 연금 모형만을 갖춘 아일랜드, 뉴질랜드로 40%를 하회하는 수준이다. 영국, 미국은 순대체율이 다소 높아 50%를 맴돈다.

OECD 국 평균소득의 절반 수준인 저소득 근로자는 평균 순대체율이 약 85%인 수준으로 연금액을 지급받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근로빈곤층이 매우 낮은 연금 수준을 수급하게 될 국가도 일부 있다. 독일, 멕시코, 슬로바키아, 미국 경우, 전직 근로자 대상의 안전망 연금액은 총 경제활동상 평균소득의 4분의 1에도 미치지 않는 수준이다.

일부 국가는 사회기여금과 사회급여 간에 보다 밀접한 연계성을 구축토록 노력을 기울여 왔다. 요컨대 이탈리아, 폴란드, 헝가리 경우, 연금 제도의 재분배적 역할은 거의 제거된 것과 다름없다. 결론적으로 연금 제도가 국민곤층을 위한 재분배적 역할을 수행치 않는다면 시험 거친 형식의 사회 안전망 제공은 이어서 퇴직 소득 구축에 보다 주도적 역할로 기여하게 될 것이다.

모든 OECD 국의 고령층 사회 안전망은 여러 형태로 구비된 상황이다. 하지만 시험 거친 형식의 프로그램이 주요 일반 형태로 자리잡는 경향이 있다. 무려 총 OECD 국을 통틀어 낸 전직 근로자의 평균 최저 퇴직금은 평균소득의 29%를 바로 하회한 수준이다.

한편 사적 조세 제도가 고령층 지원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고 본고는 지적한다. 실제로, 연금 수급자가 사회보장 기여금 부담에 참가치 않는 경우는 허다하며 또한 개인 소득이 누진적 세율에 입각하는 경우 연금 소득의 평균세율은 근로 소득의 세율보다 대개 덜한 수준이다. 게다가 대부분의 소득 세제는 연금 소득이나 연금 수급자를 특혜 우대하여 고령층에 추가 수당과 여신마저 허용하기도 한다.

총 OECD 국을 통틀어 낸 평균소득의 순대체율 수준은 총대체율 수준을 22% 능가한다. 하지만, 조세와 사회기여금이 저급료 소득자에 미치는 영향은 평균에 비해 거의 무의미한 정도인데 이는 저급료 근로자는 고급료 근로자보다 조세나 사회기여금의 부담을 덜 안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저급료 근로자의 총대체율, 순대체율 격차는 평균 17%이다.

대다수 국가가 연금 수급자 가운데 일부 부유층은 조세 감면 대상에서 제외시킨다. 그러나 미국, 독일은 두 예외인 경우이다. 이들은 소득 범위를 토대로 조세 감면을 실시하는데 독일은 이 관행에서 탈피하여 변화를 시도하는 중이다.

생활비와 생활수준 변화를 감안하여 연금 급여 수준을 조정하는 ‘물가변동율에 따른 조정’ ‘indexation’ 방안이 연금 제도 재정 지속 가능성에 관한 논의에서 중추역을 맡은 지 오래 된다. 현재 거의 모든 OECD 국이 소비자 물가를 토대로 연금 제도를 운영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여전히 평균소득을 바탕으로 연금 조정을 실시하는 국가도 일부 있는데 이 경우, 비용 부담이 소비자 물가를 토대로 연금 조정할 때보다 20% 이상이나 더 많이 가중될 수도 있다.

이 맥락의 관련 현안에 ‘실질가치 평가’ ‘valorisation’ 작업을 들 수 있다: 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시기와 연금 급여를 지급받는 시기 사이에 생긴 생활 수준 변화를 감안하여 과거 근로 소득 가치를 재조정해 내는 데 그 취지가 있다. 사실상 실질가치 평가식은 강한 효력으로 연금 급여 동향을 움직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물가변동율에 따른 조정식보다 최근에까지 관심을 덜 받아 온 상태이다.

대다수 OECD 국이 과거 근로 소득 가치를 현재 총경제활동의 소득 성장 추이를 토대로 재평가하는 추세이다. 그러나 벨기에, 프랑스, 한국, 스페인은 예외 경우로 이들은 물가 수준을 토대로 과거 소득 가치를 재평가한다. 대체로 임금 인상률은 물가 상승률을 능가하기 때문에 물가위주 실질가치는 소득 실질가치보다 눈에 띄게 낮은 소득대체율을 도출케 한다. 따라서 물가위주 실질가치 여건의 전직 근로자는 소득 실질가치 여건 때보다 40%가 줄어든 연금액을 지급받게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정의상, 향후 지급받게 될 연금 급여 추이의 현재 가치를 뜻하는 *연금 부* 富는 연금 서약 가운데 가장 포괄적 지표로 활용된다. 요컨대 이 지표는 연금 급여액 정도, 연금 수급 연령, 인구 평균수명, 임금·물가 상승세를 근거로 한 퇴직 후 연금 조정 방식에 입각하여 도안된 지표이다. 이 맥락에서, 평균소득 근로자가 최고치 연금 부를 기록한 국가는 룩셈부르크로 남자 경우 평균소득의 18 배, 여자 경우, 평균수명이 더 길어, 거의 22 배 정도의 가치를 갖게 된다. 이는 퇴직시 587 000 USD 수준에 맞먹는 것으로 총 OECD 평균치의 3 배 수준에 가깝다. 평균소득 근로자가 최저치 연금 부를 갖는 국가는 아일랜드, 멕시코, 뉴질랜드, 영국, 미국이며 이 때 연금 부는 평균소득의 6 배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 하나, 실제로 이들 국민이 근로 기간 중 연금 제도에 납부한 부담액도 수시로 미미했기 때문에 큰 규모의 연금 부를 퇴직자에 보장한 여타 국보다 이들 국가는 덜 ‘관대한’ 국가라고 간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할 수 있다.

대다수 OECD 국에서 *연금 수급 연령*은 65 세이다. 아이슬란드, 노르웨이는 연금 수급 일반 연령이 67 세이고 미국은 향후 그렇게 될 것이다. 연금 수급 연령은 체코, 프랑스, 헝가리, 한국, 슬로바키아, 터키 경우 65 세 미만이다. 소득 수준이 국가 평균의 75%와 200% 사이 수준에 있는 프랑스 근로자 경우 소득 총대체율이 OECD 평균율을 하회한다. 하지만 연금 부는 OECD 평균치를 초과하는데 이는 연금 수급 자격 연령이 60 세로 상대적으로 이른 동시에 평균수명은 상대적으로 길기 때문이다.

평균수명 격차는 연금 부 규모에 상당히 폭넓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 여타 조건이 같다는 전제하, 헝가리, 멕시코, 폴란드, 슬로바키아, 터키 등 평균수명이 짧은 국가는 OECD 의 평균치 사망률을 갖는 독일, 이탈리아, 영국보다 10%가 더 많은 연금액을 지급할 여유도 갖게 될지 모른다. 이에 반해, 평균수명 연장은 연금 제도에 추가 부담을 가중하게 된다. 평균수명이 가장 긴 일본,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스위스, 5 개국의 사망률을 갖는 남자 경우, 그렇지 못한 이보다 8 배 가까이나 더 높은 연금 부 수준을 축적하게 된다.

© OECD 2004

본 개요는 OECD 공식 번역이 아닙니다.

OECD 저작권 및 원본 출판물의 표제를 언급할 경우
본 개요를 복제할 수 있습니다.

다국어 개요는 영어와 불어로 각각 발간되었던 OECD 원본 출판물의
발췌문을 번역한 것입니다.

OECD 출판물과 개요는 OECD Online Bookshop
www.oecd.org/bookshop/에서 무료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상세한 정보는 OECD Rights and Translation unit,
Public Affairs and Communications Directorate 부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ights@oecd.org

Fax: +33 (0)1 45 24 13 91

OECD Rights and Translation unit (PAC)
2 rue André-Pascal
75116 Paris
France

본 기구 웹사이트 www.oecd.org/rights/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